

변호사시험 제3문 상법 사례형 문제 강평

이종모

I. 서론

1. 문제의 구조와 출제 의도

이번 문제는 회사법(제3문의 1)과 상행위법(제3문의 2)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제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법 총칙 및 상행위 규정의 실무적 적용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제 경향의 특징

회사법 영역에서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 결의 흠결), 2022년 판결(주식매수청구권 제척기간), 2025년 판결(의결권 구속 약정) 등 최신 판례가 집중 출제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상행위법 영역의 창고업 및 보험법 관련 문제는 출제 예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창고업은 실무적 중요성에 비해 시험 출제 빈도가 낮고, 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결합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기는 하지만 보험법 문제 중 난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수험생의 사전 대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제3문의 1: 회사법 논점 분석

1.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문제 1)

(1) 쟁점의 정리

- 주주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 약정)의 유효성
- 약정 위반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피해 당사자의 구제수단

(2) 관련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간 의결권 구속 약정에 관한 최신 법리를 확립한 케이스입니다.

구분	내용
당사자간 효력	강행규정·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적 효력 유효
회사에 대한 효력	단체법적 효력 부인 (약정 위반 결의도 유효)
구제수단	이행소송, 간접강제, 손해배상청구

(3) 문제의 해결

- 주주간 약정 제7조의 유효성: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A의 약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B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B의 구제수단: A를 상대로 추가 선임 이사 해임 안전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이행소송, 승소시 간접강제 신청,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양도의 효력 (문제 2-1)

(1) 쟁점의 정리

대표이사 X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설비를 양도한 경우, 감사 Y의 무효 주장 가부

(2) 판례 법리의 변경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 보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판례	변경 후
상대방 보호 요건	선의·무과실	선의·무중과실

(3) 문제의 해결

감사 Y의 무효 주장 타당성은 상대방 乙 회사의 선의·무중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乙이 선의·무중과실이면 거래가 유효하여 Y의 무효 주장은 부당하고, 乙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거래가 무효이므로 Y의 무효 주장이 타당합니다.

3. 주주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 2-2)

(1) 쟁점의 정리

- 제8조 위반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 2020. 10. 위반행위 발생 → 2025. 12. B의 매수청구
- 약 5년 2개월 경과 후 A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부

(2) 관련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은 주주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정립한 판례입니다.

구분	내용
법적 성질	제척기간
약정 있는 경우	약정 기간 내 행사
약정 없는 경우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5년

(3) 문제의 해결

- 기산점: 의무 위반일인 2020. 10.경

- 제척기간: 약정 부재시 5년(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결론: 2025. 12.경은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A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고, B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한 것입니다.

4. 과다 퇴직금 지급의 효력 및 책임 (문제 3)

(1) 쟁점의 정리

- 50억 누적손실 상황에서 퇴직금 5배 인상
- X 주도로 이사회·주주총회 통과 후 30억 수령
-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및 甲 회사의 X에 대한 책임 추궁

(2) 관련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과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합리적 비례관계 원칙: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황·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됨.
- 배임행위 판단기준: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위반 및 배임행위에 해당함.

(3) 문제의 해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본 사안은 ① 50억 누적손실의 경영악화 상황, ② 종전의 5배 인상 및 소급 적용, ③ X의 적극적 주도, ④ B·C 반대에도 A 찬성으로 가결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위반 및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무효입니다.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책임 유형	근거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형사책임	형법 제355조(업무상 배임죄)
부당이득반환의무	민법 제741조

Ⅲ. 제3문의 2: 상행위법 논점 분석

1.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권 및 경매권 (문제 1)

(1) 쟁점의 정리

- 보관기간 3개월 경과 후 보관료 5,000만원 청구 거부
- 수령거부시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2) 관련 법령의 검토

조문	내용
상법 제162조 제1항 단서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 청구 가능
상법 제165조, 제167조	수령 거부·불능시 공탁 또는 경매 가능

(3) 문제의 해결

- 보관료 청구: 보관기간 3개월 경과 후이므로 출고 전이라도 5,000만원 청구 가능.
- 乙의 지급·수령 거부시 조치: 공탁(임치물을 공탁소에 공탁), 경매(임치물을 경매하여 보관료 등 우선변제), 유치권 행사(보관료 변제시까지 임치물 유치)

2. 창고증권의 선의취득과 과부기재 (문제 2)

(1) 쟁점의 정리

- 창고증권 기재: 100벌 / 실제 보관: 80벌
- 丙의 창고증권 선의취득
- 甲의 인도 의무 범위

(2) 관련 법리의 검토

- 창고증권의 성질: 문언증권, 처분증권, 인도증권
- 선의취득 법리(상법 제131조, 제157조 준용): 창고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증권상 권리 취득을 대항하지 못함
- 창고업자는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한도 내에서만 인도의무를 부담.

(3) 문제의 해결

- 권리관계: 乙은 실제로 80벌을 임치한 자로서 80벌에 대한 소유권 보유, 丙은 100벌 기재 창고증권을 선의취득하여 100벌에 대한 인도청구권 취득
- 甲의 책임: 丙에게 80벌 인도(선의취득자 보호), 乙에게는 인도 불가(丙이 우선), 20벌 상당의 손해 배상책임(乙 또는 丙에게)

3. 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자대위 (문제 3)

(1) 쟁점의 정리

-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가액 5억, 보험금액 3억
- 甲의 경과실로 화재 발생, 밉크코트 전부 소실

① 乙의 X사에 대한 3억 청구 근거, ② X사의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③ 행사 가능시 그 금액

(2) 관련 법리의 검토

-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피보험자는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으며,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
- 일부보험(상법 제674조):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 대법원 1989다카21965 판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음.

(3) 문제의 해결

- ① 乙의 X사에 대한 청구 근거: 상법 제639조 제2항에 따라 乙은 피보험자로서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상법 제674조에 따른 일부보험이므로 보험금액 3억의 한도에서 청구 가능하다.
- ② X사의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거부: 甲은 보험계약자일 뿐 피보험자가 아니며,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도 乙에게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므로, X사는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행사 가능한 금액:

항목	금액
乙의 전체 손해	5억
乙이 받은 보험금	3억
乙의 잔존 손해	2억
甲의 배상책임액	5억
보험자대위 범위	5억 - 2억 = 3억

결론: X사는 甲에게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가 인정될 경우 대위취득 권리도 그 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IV. 총평

1. 난이도 평가

난이도	해당 문제
상	주주간 계약, 제척기간, 보험자대위 범위
중상	이사회 결의 흠결, 과다 퇴직금, 타인을 위한 보험
중	창고업, 창고증권

다만 창고업 및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관련 논점은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법 출제가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평이한 논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였을 것이고, 창고업의 경우에는 도무지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난이도는 예측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 응시생 유의사항

- 판례 변경의 정확한 이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선의·무과실 → 선의·무중과실)은 필수 숙지 사항이다.
- 주주간 계약의 이중적 효력 구조: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은 유효하나 회사에 대한 단체법적 효력은 부인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상법 조문의 정확한 적용: 상법 제162조(보관료 청구), 제674조(일부보험), 제682조(보험자대위)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계산 문제의 정확성: 보험자대위 범위 산정시 일부보험,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계산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문제는 회사법과 상행위법의 핵심 쟁점을 최신 판례 중심으로 통합 평가하는 우수한 문제입니다. 회사법 영역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았으나, 창고업 및 보험법 영역은 출제 빈도가 낮고 중요한 논점이기는 하지만 보험법 문제 중 난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수험생의 대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생들은 판례의 단순 암기를 넘어 변경 이유, 실무적 적용, 구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 이사회 결의, 보험자대위 등은 기업법무 실무의 핵심 쟁점이므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참고 판례>

사건표시·선고일	사건명	핵심 쟁점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회사에 관한 소송 (의결권구속약정 사건)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위반 시 상대방의 이행·간접강제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손해배상 (투자계약·주식매수청구권)	투자·인수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보증채무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 등의 효력, 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퇴직금등 (이사 보수·퇴직금)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임원 퇴직금·연봉 인상 결의의 효력, 이사의 충실의무·배임 여부, 그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금·보수 청구 가능성
대법원 1989다카21965	손해보험자대위 사건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의 취지와 적용범위,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의 적용 여부